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799
----------	-------

발의연월일 : 2025. 9. 8.

발 의 자 : 김선교 · 김성원 · 서천호
이현승 · 박덕흠 · 김위상
김상훈 · 구자근 · 박충권
김미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암표매매를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옷 돈을 받고 입장권등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또한 무전취식의 경우 10만원 이하, 암표매매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장소 이외에도 다양한 공간에서 암표가 매매되고 있고, 현행 법문 중 ‘흥행장’ 등의 일본식 표현을 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오늘날 식대 비용 및 입장권등의 가격상승으로 무전취식과 암표매매의 경범죄 처벌 수위를 상향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암표매매를 ‘공연장, 경기장, 여객 터미널, 정류장, 그 밖의 장소’로 하여 오프라인상의 암표매매를 명확히 하고, 정비대상 법률용어

를 ‘공연장’ 등으로 알기 쉽게 순화하며, 무전취식과 암표매매의 경범죄 처벌 수위를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 하도록 상향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39호 등).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9호 중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을 “(무임승차)”로,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를 “타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 (무전취식)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2. (암표판매) 공연장, 경기장, 여객 터미널, 정류장, 그 밖의 장소에서 옷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 ----- ----- -----.
1. ~ 38. (생 략)	1. ~ 38. (현행과 같음)
39. <u>(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u> <u>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u> <u>치르지 아니한 사람</u>	39. <u>(무임승차)</u> ----- ----- <u>타고</u> ----- ----- -----
40. · 41. (생 략)	40. · 41.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②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u> <u>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u> <u>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u> <u>곳에서</u> <u>웃돈을 받고 입장권 ·</u> <u>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u>	<u><삭 제></u>

<u>사람에게 되판 사람</u> <u><신 설></u>	<u>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u> <u>1. (무전취식)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u> <u>2. (암표판매) 공연장, 경기장, 여객 터미널, 정류장, 그 밖의 장소에서 옷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u>
<u>③ (생 략)</u>	<u>④ (현행 제3항과 같음)</u>